

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개정이유

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인력수요를 적정 배치하고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추진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(안 제2조 및 안 별표 3)

1) 총 계 : 1,680명 → 1,704명(증 24명)

2) 일반직 6급 이하 계 : 1,580명 → 1,604명(증 24명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4조 및 제29조, 제30조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
다. 합 의

1) 부패영향평가 : 제외대상

2) 성별영향평가 : 제외대상

3) 규제사전심사 : 대상아님

4) 위원회 관련 사전협의 : 대상아님

라. 기 타

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2) 입법예고 : 대상

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1,680명”을 “1,704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1,637명”을 “1,659명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43명”을 “45명”으로 한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3]

노원구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(제4조 관련)

(단위 : 명)

기 관 별 직 급 별	총 계	본 청	의회사무국	보건소	동
총 계	1,704	-			
정무직 계	1	-			
구청장	1	1			
일반직 계	1,692	-			
2급	1	1			
4급	10	8	1	1	
5급	76	43	3	11	19
6급 이하 계	1,604	-			
전문경력관 계	1	-			
별정직 계	11	-			
5급 상당	2	2			
6급 상당 이하 계	9	-			

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

국가정책 및 서울특별시 시책 사업 등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따른 인력확충 및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증원으로 인건비 추가 소요 발생

2. 비용추계의 전제

- 1) 추계기간을 2027년부터 2031까지 5년으로 함.
- 2) 매년 봉급인상률 3.5%(2026년 기준)를 감안하여 추계함.
- 3) 추계 대상은 아래와 같음

구분(명)	총 증감	6급	7급	8급	9급
계	24	6	9	6	3

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 : 천원)

연도		1차년도 (2027)	2차년도 (2028)	3차년도 (2029)	4차년도 (2030)	5차년도 (2031)	합 계
구분							
세입	보조금(a)						0
세출	인건비(b)	1,868,196	1,933,583	1,994,702	2,057,762	2,122,828	9,977,071
□비용(b-a)		1,868,196	1,933,583	1,994,702	2,057,762	2,122,828	9,977,071

4. 작성자 : 행정지원과 조윤경(☎02-2116-3088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원의 총수)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의 총수를 <u>1,680명</u> 으로 하며, 다 음 각 호와 같다.	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 ----- ----- <u>1,704명</u> ----- -----.
1. 집행기관의 정원: <u>1,637명</u>	1. ----- <u>1,659명</u>
2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: <u>43명</u>	2. ----- <u>45명</u>

<관계법령>

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제29조(직급별 정원)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30조(정원의 규정)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20. 3. 10.>

1. 집행기관의 정원(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)
2. 삭제 <2020. 3. 10.>
3.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
4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
5.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

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[「지방전문경력관 규정」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(이하 “지방전문경력관”이라 한다)의 정원을 포함한다]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시·도의 5급 이하(시·군·구는 6급 이하)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08. 7. 3., 2013. 12. 4.>

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(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「지방전문경력

관 규정」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)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13. 12. 4.>
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12. 16.>

- ⑤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